

1. 개정이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신체활동장려 사업’ 도입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6719호, 2019. 12. 3. 공포, 2021. 12. 04.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사업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지자체 금주구역 지정권한 부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음주폐해예방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7773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강친화기업 인증에 필요한 서식 제정(안 제3조의2, 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신설)

- 1) 시행령에서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인증신청, 인증관리를 위한 행정 서식 정비가 필요함.
- 2)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서, 인증의 표시,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신청 등에 관한 서식규정을 마련함.

나.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안 제3조의5 신설)

- 1) 시행령에서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부령에 위임함.
- 2)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건강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관련 조사, 연구 등을 제시함.

다.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안 제3조의6 신설)

- 1) 시행령에서는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 2) 이에 따라,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연장 여부 결정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마련함.

라. 인증의 취소(안 제3조의7 신설)

- 1) 법에서 인증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어 인증취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필요함.
- 2) 따라서 인증취소의 예고통보, 인증취소 시의 통보 및 게시 등 절차를 규정함.

마. 음주폐해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4조의2)

- 1) 법에서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음주폐해예방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되어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선출방법, 임기 등을 규정함.

바.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안 제4조의3)

- 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금주구역에 안내표지를 설치하도록 법 규정이 신설됨.
- 2) 따라서 별표1의2와 같이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함.

사. 신체활동사업 시행에 따른 기준 및 운영방법(안 제17조의2 신설)

1) 법에서 신체활동장려사업에 대해 규정하며 사업 내용,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2)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신체활동사업을 장려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프로그램 개발 등 사업기준 및 운영방법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7까지,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서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인증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서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3(건강친화기업 인증 표시의 사용)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5와 같으며, 사용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3조의4(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 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신청서에 건강친화기업인증서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5(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지원사업) 영 제8조제1항제6 호에서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관련 조사, 연구 등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3조의6(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신청서에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유효기간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인증유효기간 동안 건강친화경영의 이행실적
2. 그 밖에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자료 등

제3조의7(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음주폐해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3(금주구역 안내표지) 법 제8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금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6 중 “별지 제1호의3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의4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내용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사업은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올바른 신체활동 지식 및 실천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연구사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개인별 신체활동증진 서비스사업·홍보·캠페인 사업 등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기준 및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보건교육·영양관리·구강건강관리·건강검진·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을 “보건교육·영양관리·구강건강관리·건강검진·신체활동지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체활동지도실 및 신체활동지도에 필요한 장비

별표 1의2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1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4조의3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건강친화기업 인증 신청서 등) 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강친화기업인증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u> <u>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서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강친화기업인증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3조의3(건강친화기업 인증 표시의 사용) 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는 별표5와 같으며, 사용기간은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u> <u>②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홍보물 등에 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를 할</u>

<신 설>

<신 설>

<신 설>

수 있다.

제3조의4(인증서 재발급 신청 등)
건강친화기업인증서를 발급받
은 자가 영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강친화
기업인증서 재발급신청서에 건
강친화기업인증서와 증명자료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5(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
성 촉진 지원사업) 영 제8조제1
항제6호에서 “건강친화 직장환
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강친화제도 우수사업장에
대한 사례 발굴 및 홍보
2.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관련
조사, 연구 등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
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
는 사업

제3조의6(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
청)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
라 인증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

<신 설>

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
친화기업인증신청서에 영 제7
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
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
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중 인증
유효기간 중에 보건복지부장관
이 확인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연장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검토하여 인증유효기
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

1. 인증유효기간 동안 건강친화
경영의 이행실적
2. 그 밖에 건강 친화적 환경 조
성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자
료 등

제3조의7(인증의 취소) ① 보건복
지부장관은 법 제6조의4제1항
에 따라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증
을 받은 자에게 취소 사유와 소
명자료의 제출기간을 구체적으
로 밝혀 취소의 예고통보를 하
여야 한다.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가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차로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2차로 예고통보한 소명자료의 제출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소명자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인증을 취소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의2(음주폐해예방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음주폐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

명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
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대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
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의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
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신 설>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① 법 제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1. (생 략)
2.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공동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3(금주구역 안내표지) 법
제8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금
주구역 안내표지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① -----

----- 별지 제2호서식 -----

1. (현행과 같음)
2. 별지 제2호의2서식-----

[illegible]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의6(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신청) -----

----- 별지 제3호서식 -----

제7조의3(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① -----

--- 별지 제4호서식-----

복지부장관(영 제32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
은 보건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
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받은 자가 그 자격증을 잃어버
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
발급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2
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재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의 발급 또
는 재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교육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교육
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1조(조사대상가구의 재선정등)

① 시·도지사는 영 제20조제1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별지 제5
호서식-----

-----.

1. · 2. (현행과 같음)

③ -----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조사대상가구의 재선정등)

① -----

항에 따라 조사대상가구가 선정
된 때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
라 별지 제5호서식의 국민영양
조사가구선정통지서를 해당 가
구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 별지 제8호서식-----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내용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
조의3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의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사업은 생애주기 및
생활터별 올바른 신체활동 지식
및 실천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연구사업은 법 제16
조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개인별 신체활동증
진 서비스사업·홍보·캠페인
사업 등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기
준 및 운영방법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의 실시등)

①-----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교육·영양관리·구강건강관리·건강검진·운동지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운동지도실 및 운동부하검사장비(체력측정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생략)

----- 보건교육·영양관리·구강건강관리·건강검진·신체활동지도등-----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1.·2. (현행과 같음)

3. 신체활동지도실 및 신체활동지도에 필요한 장비

4. (현행과 같음)

[별표 1의2]

금주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방법 (제4조의2관련)

1. 금주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가. 표지 부착

-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소가 금주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2)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금주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歩道)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3)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표지 내용

- 1)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금주를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예시)

	금 주 구 역 〈건물, 시설〉
	금 주 〈그 밖의 경우〉

나)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주구역으로, 건물 또는 시설 내에서 음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2)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

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3)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5]

건강친화기업 인증의 표시(제3조의3 관련)



건강친화기업의 영문 표기 Health Friendly의 이니셜 H와 F의 조합

- H(건강)과 F(친화기업)이 만나 모두의 행복한 웃음(Happy)을 만들어냄
- 전체적인 형태는 노동자의 건강한 웃음을 떠올리며 동시에 두 명의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창밖의 파란 하늘(행복한 내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
- 두 개의 직선과 그 직선을 관통하고 이어 포용하는 하나의 곡선은 노동자와 기업 그리고 이 둘을 이어주는 정부의 모습이며 하나가 되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모두의 행복에 대한 의지를 나타냄

건강친화기업 인증신청서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재인증)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개월
------	-----	------	-----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 종	
	규 모 대기업[], 중소기업[]			
	주소	본 사	(☎ -)	
		사업장	(☎ -)	
	담당부서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현황	자본금 (억 원)	종업원 수 (명)		주력분야	매출현황(최근 3년간)	
		정규직	계약직		연도	매출액(억 원)

각종 수상 및 인증획득 현황	수상 및 인증획득 명		수상 및 인증 일자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 제2항·제6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3조의6에 따라 건강친화기업인증(유효기간 연장, 재인증)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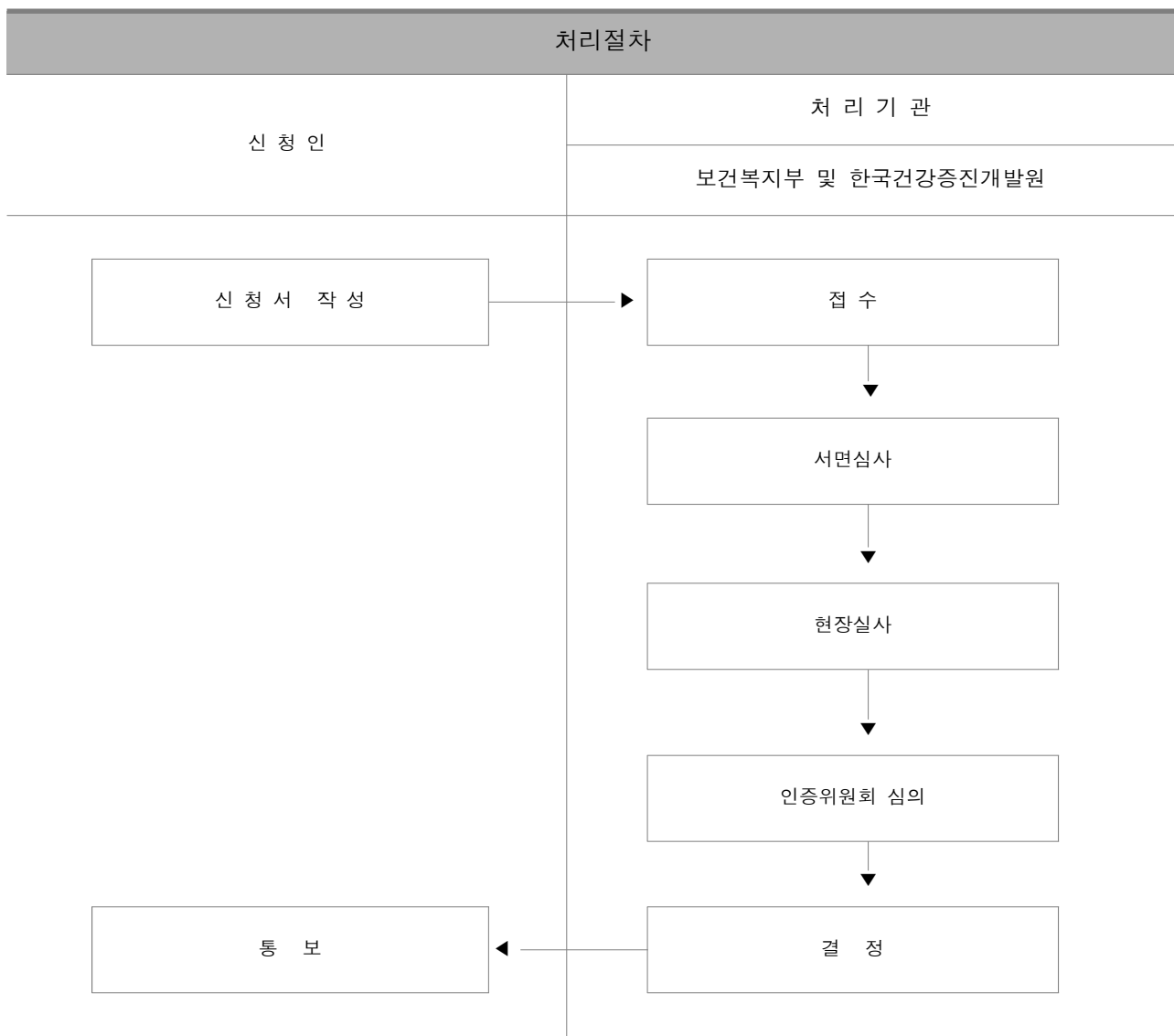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건강친화경영 운영체제 개요 2. 건강친화경영 운영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 3. 그 밖에 건강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4. 건강친화기업 인증서(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 호

건 강 친 화 기 업 인 증 서

기업명:

소 재 지:

유효기간:

위 기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우수한 건강친화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건강친화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직장 내 환경을 건강 친화 적으로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기에 건강친화기업으로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직인

건강친화기업인증서 발급 대장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80g/㎡)]

건 강 천 화 기 업 인 증 대 장

인증번호:

업 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사업장 소재지		팩 스	
인 증 일		인 증 유 효 기 간 만 료 일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내 용		변 경 일

210mm×297mm[백상지(1종)120g/㎡]

건강친화기업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인증현황	인증번호	인증일자	
변경사항 또는 재발급 사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건강친화인증서 2. 증명자료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보건복지부	➔	서 면 심 사 보건복지부	➔	결 정 보건복지부	➔	통보 신청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